

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7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(대통령령제17587호 2002. 4. 27)되므로써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운용 · 관리(안 제3조)
- 나. 장기에치기금액의 예치 · 관리(안 제4조)
- 다. 당해연도기금 사용액의 운용 · 관리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심의사항(안 제1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우리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동법 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
- 기금운용 ·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장기에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,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의 결산부분을 포함 하므로써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 ·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12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